

#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관광) 관련법률이해

사례중심질의(신규법률)

 LAW FIRM GODO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





## 이용환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의사면허취득  
대한변협-의료전문변호사  
대한변협-형사전문변호사

### 자문위촉내역

국민연금공단 자문변호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자문변호사  
대한요양병원협회 윤리이사  
한국지질지원연구원징계위원회 위원

### 수상내역

서울특별시의사회 공로상 수상  
동북아우의연맹 글로벌우의대상 수상

01

# 의료관광관련 법률이해

사례중심질의

의료광고관련질의 1.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미국 교민사이트에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불법유치행위로 포함되는지요?

의료광고관련질의 1-1.

미등록유치기관(유치업체 포함)의 해외 온라인 홍보시 (sns홍보 등) 의료법(의료광고) 등의 국외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의료광고관련질의 2.

유치등록 의료기관에서 해외지사(또는 법인)를 설치하여 운영중인데, 해외지사(또는 법인)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해외지사(또는 법인)에서 현지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본원)에 보낼 경우, 위법되는 부분은 없나요?

의료광고관련질의 2.

2) 국내 의료기관(본원) 홍보·광고를 할 때, 해외지사(또는 법인)를 함께 홍보·광고하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료광고관련질의 3.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외국인환자가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저희 의료기관에서의 수술후기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가 없는 환자 자발적인 게재일 경우)



의료광고관련질의 4.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수술결과에 불만족하여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저희 기관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병원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저희가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광고관련질의 5.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으로, 기관 홍보를 위해 다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과는 다른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에 모두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료광고관련질의 6.

치과 전문의를 보유한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해외에서 외국인대상 양악수술을 홍보하고자 할 때, 편의상 "○○성형외과"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국내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02

# 외국인 환자 유치업 관련 법률 이해

사례중심질의

의료광고관련질의 7.

의료법상 정부산하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의료관광센터에서 개별의료기관의 홍보책자 비치·배포가능한지요?

또한 외국인환자가 의료기관 추천을 요청할 경우, 회원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관련질의 8.

한국과 무역업을 하는 중동회사입니다. 중동 현지 무역 거래처 사람(중동 현지인)을 한국병원에 소개하고 의료 기관으로부터 일정 소개료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소개료를 받기위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해야만 하는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관련질의 9.

유치등록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알선하여 수수료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를들면 우리 의료기관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를 다른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개료를 받을 경우, 불법인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관련질의 10.

해외 유치업체(국내 유치업 등록은 하지 않음)에서 계약을 맺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환자 송출시 한국입국 후 환자 에스코트 교통, 숙박, 통역 등 컨스어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유치행위인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관련질의 10-1.

계약 맺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부터 입국에서 출국기간까지 교통, 숙박, 통역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외유치업체가 환자의 입국-진료-출국까지 외국인환자와 동행할 경우 불법 유치행위로 간주되는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관련질의 11.

유치업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입니다. 의료해외진출  
 법 제2조 제3호(외국인환자 유치)의 정의가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  
 여 ①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③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우리 의료기관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진료를 할 경우도 불법유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03

# 진료비 등 비용관련 법률이해

사례중심질의

진료비 등 비용관련질의 12.

한국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입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환급 가맹을 맺은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해당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미용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공급확인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진료비 등 비용관련질의 13.

얼마전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으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부가세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환자의 부가세 환급을 거부할 수 없는지요? 법적으로 반드시 부가세 환급 전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지, 환급을 거부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비 등 비용관련질의 14.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의 한 성형외과에 예약금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예약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예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수술 3일전까지는 일부 환불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예약금 환불 불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용환 대표변호사

☎ 010.6643.8787

🏠 godolaw@naver.com

✉ godolaw.co.kr